

제 1705 호
1992년 2. 2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이 상 배
 편집인 : 관 보 관 이 상 진
 전 화 : 731-8111~3
 인 쇄 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
 전 화 : 273-8111~3

시 보

차 레

● 조 비

- 제 2966 호 서울특별시영근로자우생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2
- 제 2967 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2
- 제 2968 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2
- 제 2969 호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3
- 제 2970 호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4
- 제 2971 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 4
- 제 2972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 5

공																				
발																				

1. 세 공무원출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"노년기를 순감하고 입한보람 오래간다"
 B500

조 례

서울특별시시장 이상배 ㉞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966호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
징수조례증개정조례
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
 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(별표) 중 아파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992. 12. 2

구 분	단 위	사 용 료 율			비 고	
		근로자 회 관	공단근로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	부 녀 복 지 관		
아 파 트	임대료	12~13평형	1세대 1월	—	22,000원	—
		15~16평형	"	—	26,400원	—
	임대 보증금	12~13평형	1세대기준	—	44,000원	—
		15~16평형	"	—	52,800원	—

부 칙

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2. 2
서울특별시시장 이상배 ㉞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967호
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개정조례
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 중 다음과
 같이 개정한다.
 제4조제1항 중 “지방시설기정 또는 지방
 공업기정”을 “지방시설기정·지방공업기정
 ·지방환경기정 또는 지방보건지정”으로
 “지방토목기과·지방기계기과·지방전기기
 과 또는 지방화공기과”를 “지방토목기과·
 지방기계기과·지방전기기과·지방화공기과
 ·지방환경기과 또는 지방보건기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
 에 공포한다.

1992. 12. 2
서울특별시시장 이상배 ㉞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968호
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
설치조례증개정조례
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
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명 중 “한강공원관리사업소”를 “한강관
 리사업소”로 한다.
 제1조 중 “한강공원관리사업소”를 “한강
 관리사업소”로 한다.
 제4조제4호 중 “한강공원”을 “한강”으로
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1.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)의 교통국 제1호·하수국 제18호·제20호 내지 제33호 및 제47호의 수입기관 중 "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"을 "한강관리사업소장"으로 한다.

2.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"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"을 "한강관리사업소장"으로 한다.

③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행위 또는 한강관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④(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한강공원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한강관리사업소를,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2. 2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969호

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
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"하수처리장"을 "하수처리사업소"로 한다.

제1조중 "안양"을 "가양"으로 하고, "하수처리장(이하 "처리장"이라 한다)을 "하수처리사업소(이하 "사업소"라 한다)"로 한다.

제2조 중 "처리장"을 "사업소"로 한다.

제3조 중 "처리장은"을 "사업소는"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"장장"은 "소장"으로 하고, 동조 제1항 중 "처리장"은 "사업소"로, "장장"은 "소장"으로, "하수처리장장"은 "하수처리사업소장"으로, "안양 및 난지 하수처리장장"은 "가양 및 난지 하수처리사업소장"으로 하며, 동조 제2항 중 "장장"은 "소장"으로, "하수도법상의 하수처리장관리인으로서"를 삭제하며, "장무"는 "소관사무"로 한다.

제5조 중 "처리장"은 "사업소"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별표)의 하수국 제3호·제6호·제8호 내지 제10호·제13호 내지 제15호·제17호 및 제44호·제45호의 수입기관란 중 "하수처리장"을 "하수처리사업소장"으로 한다.

③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장이 행한 행정처분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하수처리장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하수처리사업소장의 행위 또는 하수처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④(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하수처리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사업소를, 하수처리장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사업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청